

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24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26일

3. 제안이유

○ 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준용

○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,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조정 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 명시(안 제5조제2항 신설)

○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일부 조정(안 제6조제2호, 제4호)

○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 허가 등(안 제13조 신설)

○ 원상복구 및 허가 취소 조문 추가(안 제15조, 제16조 신설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○ 2008년 5월13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된 국토해양부령 제10호 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

- 경사로에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, 터널전후 금지구간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
-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동 사용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하고
-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의 원상복구 및 허가 취소 조문 신설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경기도, 충청남도, 전라남도, 경상남도는 개정완료 하였음